

會計情報의 公開



1. 序 言

現代會計는 情報시스템으로서의 意義와 性格을 갖고 있는 것으로 解釋한다. ASOBAT에서는 會計는 本質的으로 情報組織으로 보다 正確히 말하면 會計는 情報의 一般理論을 效果的인 經濟活動에 관한 문제에 적용한 것이라고 하고, 會計를 “情報의 利用者가 事情에 정통하여 判斷이나 意思決定을 할 수 있도록 經濟的情報를 識別하고 測定하며 커뮤니케이팅하는 過程”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ASOBAT가 會計를 이와 같이 情報시스템의 규정으로 새로운 會計基準을 提示한 以來 美國會計關係機關 및 學者間에는 情報로서의 會計의 役割을 充實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理論的 實踐的 연구에 많은 努力を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會計情報의 公開問題는 會計의 全額域에 걸쳐 論議될 問題라 생각한다. 또한 옳은 會計나 또는 그렇지 못하나 하는 判斷의 問題도 결국은 會計가 情報로서의 役割을 充分히 수행하느냐에 관한 會計의 基本目的과 관련하여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간단히 言及하였지만 會計의 目的是意思決定을 위한 情報를 提供하는 데 있다. 이것은 財務的 資料가 그 밖의 適切한 情報의 公開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날 會計情報가 어떤 性格과 內容을 갖고 또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點에 대한 명확한 解答을 求함으로써 可能하게 된다.

李 正 浩
(서울大 經營大 教授)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for whom) 會計情報가 公開되느냐 하는 즉 報告對象에 관한 問제이다. 둘째는, 報告對象이 決定되었을 경우 그는 어떤 目的에서 情報를 要求하느냐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 이 경우에 어느 程度의 情報가 公開되어야 하느냐 하는 問題를 決定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會計情報의 公開問題는 누구か, 어떤 目的에서, 얼마만큼의 情報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左右되며 會計情報의 評價問題도 이 點에 焦點을 맞추어 評價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위에서 提示한 問題의 分析에 들어가기 前에 우리는 會計情報의 公開가 어떤 理由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점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會計 그 自體의 問題라고 하기보다는 政治·經濟·社會와 관련된 問제라고 할 수 있다.

商人으로 하여금 財務諸表를 作成하도록 한 最初의 法令은 1673年에 制定된 佛蘭西의 商業條例(Ordonnance de Commerc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을 投資家·債權者 그리고 一般大衆에게 公開하기 시작한 것이 1800年代의 英國을 中心으로 한 佛蘭西·獨逸 등의 歐羅巴 諸國家들이었다. 그러나 財務的情報의 公開問題가 具體적으로 論議되기 시작한 것은 1929年的 大恐慌을 거치고 난 이후의 일이다. 1929年的恐慌은 그의 深刻性에 있어서나 期間에 있어서 종래에 經驗했던恐慌과는 質的으로 다른 것으로서 資本主義의 矛盾을 그대로 露呈하고 말았다. 永遠한 繁榮을 누리던 美國經營者的의 꿈은 爆破

히 깨지고 말았다. 大恐慌은 經濟的으로 뿐만 아니라 政治的으로도 危機를 불러 일으켰다.

여기서 美國은 企業을 個人的私有物로 보던 종래의 株式會社觀에 대하여反省이 나타나 社會的制度로서의 株式會社를 論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株式的 社會的分散에 의하여 所有가 分散되고 社會의 富가 分散되어 所得分配의 公平이 體現됨과 동시에 資本家에 의한 生產手段의 所有·管理가 아니라, 所有分散의 結果經營者가 生產을 管理·支配하는 社會制度에로의 轉換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中小의 資本家뿐만 아니라 勞動者·農民 그리고 一般大衆을 株式資本關係에 參與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所有의 分散→株式的 分散→所得分配의 公平을 通해서 資本家, 勞動者, 農民 그리고 一般大衆을 企業 그리고 現體制에 參與시킴으로서 歸屬意識을 形成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株式的 一般大衆에의 分散에 의한 株式民主主義는 企業의 公開主義를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法的制度로서 具體化된 것이 1933年的證券法(Securities Act)과 1934年的證券去來所法(Securities Exchange Act)이다. 이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美國會計關係機關에서는 企業情報의 公開와 관련된 諸原則 및 規則을 制定하는 作業을 繼續하고 있다.

2. 會計情報의 公開對象

오늘날 會計情報의 公開對象은 企業과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集團이 된다. 利害關係集團에는 株主, 投資者, 債權者, 財務分析家, 政府機關, 經營者, 從業員, 一般大衆 등 많은 利害關係者가 있다. 이들 각 集團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適合한 會計情報を 要求하고 있다. 相異한 立場에서 相異한 情報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들 情報利用者에게 共通의 으로 적용할 수 있는 會計情報を 確立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近年에 發表된 한 研究結果에 의하면(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Oct., 1973) 財務諸表의 目的設定에서 財務諸表利用者는 다음에 記述한 前提下에서 經濟의 意

思決定에 기여할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하는데 두고 있다.

첫째, 財務諸表의 利用者는 自己의 意見決定이 現金에 어떤 結果를 가져올 것인가를豫測하고 比較하여 評價하려고 한다.

둘째, 企業에 의해서 이루어진 經濟的 意思決定이 얼마만큼 現金에 影響을 미치는가에 관한 情報는 利用者에게 現金循環(cash flow)을豫測하고 比較하여 評價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주로 事實에 基礎를 둔 情報로서 客觀的으로 測定可能한 情報가 主要解釋에 基礎를 둔 情報와 區別하여 財務諸表에 포함시킨다면 그의 有用性은 增進시킨다.

이와 같이 볼 때 財務諸表는 주로 株主, 投資者 및 債權者에게 第1次의으로 報告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投資家, 株主 그리고 債權者에 의하여 意思決定을 위한 情報를 提供하는 目的을 가지고 會計論理를 展開하고 있다. 그러나 會計情報은 이들뿐만 아니라 經營者, 政府機關去來處, 財務分析家, 證券去來所, 言論機關, 經濟團體, 勞動組合, 一般大衆 등도 각각의 目的에 따라 필요한 情報를 얻고자 하고 있다. 이들이 갖는 共通的 情報欲求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解明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會計理論은 投資家, 債權者, 株主들에게 有用한 情報는 이들 以外의 利害關係集團에게도 有用하다고 하는 前提下에서 展開시킨다.

(1) 投資者

投資家들의 意思決定은 주로 株式的 買入一賣却一保有(buy-sell-hold)를 決定하는 意思決定으로 集約하여 볼 수 있다. 이 決定에 影響을 주는 直接적인 指標는 株價變動, 配當率, 株當利益(EPS) 株價利益率(P/E ratio) 등이 된다. 이들 投資指標는 過去의 經濟活動의 結果 數值의 으로 測定되어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投資家들이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은 過去의 營業成果에 의한 好條件의 投資指標가 아니다. 그들이 追求하고 있는 점은 將來에 대한 위의 投資指標에 관한 展望이다. 投資家가 要求하는 情報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한 實證的統計調查

에 의하면(Baker and Haslem, "Information Needs of Individual Investors," *Journal of Accountancy* Nov. 1973) 投資家는 將來에 대한 展望을 밝게 할 수 있는 指標에 큰 興味를 나타내고 있다는 點을 알 수 있다. 즉 1位부터 32位까지의 會計情報의 優先順位를 決定하는데, 1位가 企業의 장래 經濟的 展望, 2位가 經營者の 質的 水準, 3位가 當該產業의 장래 經濟的 展望, 4位가 장래 賣出額의 增加, 5位가 企業의 財務能力의 上昇, 6位가 株當利益額의 上昇 등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共通的 特徵은 當該企業의 展望에 관해서 깊은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또한 株主는 經營者の 雇用, 連任, 解任, 報酬 등에 관한 意思決定을 하고 會社方針의 重要한 变경사항에 관한 承認 또는 否認을 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들의 決定事項과 관련된 意思決定을 하는데 필요한 情報를 要求하고 있다.

(2) 債權者

財務諸表의 目的 研究團의 調査에 의하면 投資者와 債權者의 情報要求는 本質的으로 다른 것 이 없다고 하고 그들은 다같이 企業에서의 現金循環(cash flow)을 創造할 수 있는지의 可能性에 관하여 지대한 關心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現金循環의 金額, 時期에 대한 豫測을 比較·評價함과 아울러 現金循環의 不確實性에 대해서도 關心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事實上 債權者は 企業에 대한 信用의 擴大, 信用條件의 決定과 관련된 意思決定을 갖게 되며 이 경우에 元金과 利子를 期限內에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關心을 갖게 된다. 따라서 企業의 支給能力(solvency)은 信用供與의 重要한 判斷指標가 된다. 이를 判斷하기 위해서는 우선 企業의 危險負擔에 對한 評價를 함과 아울러 資金循環과 관련된 情報가 要求된다. 좀 具體的으로 보면 危險負擔에 관한 判斷은 投資額, 利子는 물론 會社의 破產, 整理, 他會社의 引受可能性과 延滯利子 등의 程度가 重要한 要素가 된다. 또한 資金의 流動狀況을 表示하는 資金運用表는 近年에 와서 그 重要性이 增加하고 있다. 이 밖에도 長期借入金의 程度, 擔保物의 存在與否,

債權者에게 주어지는 優先權, 偶發債務의 存在, 使用의 制限된 現金, 配當金의 滯納 등 支給能力을 判斷할 수 있는 각종 經營指標에 관한 情報를 諸多로 한다.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企業과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集團으로서는 投資家와 債權者以外에도 여러 集團이 있으나 이들이 要求하는 情報內容에 관해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3. 公開의 本質과 情報量

公開(disclosure)가 意味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Kohler는 회계학자전에서 "貸借對照表 또는 기타 財務諸表에 詳細한 表題, 脚注, 또는 監查報告者로서 事實 또는 狀況을 明快하게 表示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公開問題가 갖는 多樣한 意味와 内容을 감안할 때 이것은 充分하게 公開概念을 規定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財務的情報를 필요로 하고 있는 者가 누구나 하는 問題를 우선 決定하고 다음에 財務的情報를 필요로 하는 者가 어떤 情報를 要求하느냐 하는 問題와 관련하여 規定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다.

앞에서 簡單히 論議한 바와 같이 財務的情報는 投資家, 株主, 債權者들이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데 有用한 情報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前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면 財務報告의 公開란 能率的 資本市場이 最適의 活動을 해 나가기 위한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將來의 配當趨勢를 豫測하는데 充分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強調하고 있는 점은 實際에 敏感한 投資家와 財務分析家들을 意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事實上 모든 投資家들은 個個 企業이 갖는 相對的 危險의 程度를 파악하여 自己들의 投資意思決定을 하는데 필요한 情報를 알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서 債權者나 政府機關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要求에 따라 필요한 情報를 얻을 수 있는 權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公表되는 財務諸表에만 크게 依存할 필요는 없다.

얼마만큼의 情報를 公開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利用者の 專門知識의 程度와 바람직

한 基準(standard)에 따라 다르다. 一般的으로 提示되는 3가지의 公開概念은 適切性(adequate), 公正性(fair) 그리고 安全性(full)으로 要約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一般的으로 쓰이는 概念은 適切한 公開(adequate disclosure) 概念이다. 이 概念은 財務諸表를 그릇 理解시키지 않는다고 하는(not misleading) 消極的 目的에 해당하는 公開의 最小限의 範圍를 意味한다.

이에 대해서 公正性 및 完全性의 概念은 이보다는 보다 積極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다. 즉 公開의 公正性은 모든 潛在的 利用者에 대해서 동일한 取扱을 하기 위한 倫理的 基準을 뜻한다. 公開의 完全性은 意思決定과 關聯된 모든 情報를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것을 意味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公開의 完全性을 過剩情報의 提供으로 解釋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오히려 많은 情報가 有害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즉 雜多한 情報가 많아서 重要한 情報가 은폐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財務報告書의 理解를 困難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하튼 投資家와 그 밖의 利害關係者에게 表示되는 情報는 適切하고公正하며 完全하여야 한다는데는 異論이 없다. 이를 概念을 서로 通切한 關聯性을 가지고 使用한다면 이를 概念間의 相違點은 거의 없다. 財務諸表의 公開와 關련하여 留意하여야 할 것은 最善의 方法으로 意思決定에 기여할 수 있는 重要하고 關聯性 있는 情報를 財務諸表의 利用者에게 提供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重要하지도 않고 또 無關聯된 情報는 情報를 意味하고 또 理解可能性을 增進시키기 위해서 除外시켜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財務的情報의 公開와 關련하여 反對理論을 提起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反對理由는 대략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나타나고 있다. ① 公開에 의하여 競爭關係에 있는 會社를 有利하게 하여 公開會社의 株主를 不利하게 한다는 점, ② 財務的情報를 完全히 公開함으로써 賃金協商을 하는데 勞動組合이 有利한 立場에 서게 된다는 점, ③ 完全公開를 할 경우 投資者들이 會社政策이나 節次를 理解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誤導하기 쉽다는 點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主張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과 같이 競爭이 激甚한 狀況下에서 會社가 自發적으로 公開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會社에 대한 情報는 다른 정보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또한 勞動組合과의 賃金協商에 있어서 不利한 立場에 서게 된다고만 볼 수 없고, 오히려 協商의 一般分위기를 훨씬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번째 反對理由에 대해서는 오늘날 會社에 관한 知識은 널리 普及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財務分析家나 投資管理者는 會計에 관한 깊은 知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財務的情報의 公開가 投資家들을 誤導시킬 念慮가 없다는 것이다.

4. 公開事項의 選擇基準

企業과 關련된 諸種의 情報는 어떤 基準에 따라 選定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핸드릭슨은 目的適合性(relevance)과 重要性(materiality)을 들고 있다. 물론 最近의 會計理論은 情報論에 따라 展開되므로 ASOBAT, APB Statement No. 4, Study Group the on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등의 諸報告書에서는 이 밖에도 情報의 有用性을 決定하기 위한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報告書의 여러가지 共通的 特徵의 하나는 한결같이 情報의 目的適合性을 그의 第一次的 要件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情報의 目的適合性은 會計情報가 “活用되고 意圖된 行動 또는 얻으려고 期待한 結果와 關련을 맺고 있던가 또는 그것과 有效하게 關係를 맺어야 한다는 要請”을 뜻한다 (ASOBAT, p. 8). 그러므로 目的適合性은 情報의 利用者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으로서一律的으로 어떤 情報가 目的適合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規定할 수가 없다. 예로서 投資者가 株式投資에 관한 意思決定를 하려고 하는 立場에 있을 때 그가 關心을 갖는 問題는 앞으로의 配當에 關한 展望이다. 따라서 有利한 配當을 左右하는데 影響을 미치는 重要한 情報, 즉 企業의 장래의 展望, 經營者の 資質, 產業의 經濟展望, 賣出額의 增加豫想, 豫想되는 株當利益의 上昇 등에 關한 情報가 目的適合한 情報가 된다.

公開事項을 決定하는 데 判斷基準으로서 사용

되는 重要性(materiality)은 財務諸表 및 財務報告書의 利用에 傳達하여야 할 情報를 選擇하기 위한 基本的 基準의 하나가 된다. AAA의 1957年度 會計基準에서는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어떤 項目에 관한 知識이 그 情報를 받는 投資家의 意思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確信할 理由가 된다면 그 項目은 重要性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意思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情報의 選擇問題는 會計專門家の 立場에서 判斷되는 問題이다. 重要性은 報告의 基準을 마련하는 경우 判斷基準이 된다. 財務報告를 作成할 때 會計專門家の 하나의 責任은 報告者の 利用者가 活用할 수 있도록 意義있는 方法으로 많은 情報를 要約·整理하는데 있다. 너무 많은 資料는 적은 경우와 더불어 그 資料의 利用者들을 誤導시킬 可能성이 있다. 즉 필요 이상으로 많은 情報가 提供되게 되면 意思決定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關聯性 있는 情報가 雜多한 情報에 은폐되기 쉬우며, 또한 情報의 量이 적으면 그 利用者는 적절한 資料에 基礎하여 意思決定을 할 수 없게 된다.

會計情報は 計量的 情報와 非計量的 情報로 区分하여 考察하기도 한다. 종래에는 會計情報라고 할 때 計量的 情報에 局限시키는 것이一般的思考이었으나 近年에 와서는 非計量的 情報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이것도 會計情報에 包含시키는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헨드릭슨 教授에 의하면 重要性에 따라 公開하여야 할 事項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1) 純利益 및 資產評價에 影響을 미치는 計量的 資料.
 - (2) 公表 財務諸表에 表示되는 計量的 資料의 總計 및 項目區分.
 - (3) 財務諸表에 計上할 수 있을 程度로 正當性을 가지고 推定할 수 없는 計量的 資料.
 - (4) 叙述形式으로 밖에 公開할 수 없는 情報.
 - (5) 個人 또는 集團의 權利와 持分에 影響을 미치는 會社와 特定個人 혹은 集團과의 特別한 關係.
 - (6) 經營者가 앞으로 수행할 計劃 및 豫測.
- 위의 6個項目中 (1) (2) (3)은 計量的 測定項目이고 (4) (5) (6)은 非計量的 項目이다.

計量的 資料를 어느것이 重要하고 또 重要하지 않은가에 관한 判斷基準으로서 會計專門家の 종종 純利益·總利益 또는 그 밖의 數值基準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報告된 利益이 實質 한 純利益보다 10%를 超過한다든가, 또는 10%以下の 誤差를 내게끔 하는 項目은 重要性이 있는 項目으로서 이것은 利用者の 意思決定을 誤導시키는 것으로 보는 慣例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計量的으로 表示할 수 없는 情報는 그것이 갖는 重要性과 目的適合性을 判斷하기가 심히 困難하다. 그것은 意思決定時에 이들 情報를 利用하는 당사자에 따라 그것이 갖는 重要性과 目的適合性이 다르기 때문이다.

非計量的 情報는 크게 會計政策(accounting policy)의 公開와 會計變化(accounting changes)의 公開로 区分하여 볼 수 있다.

會計政策에 관한 公開問題는 會社間에 또는同一會社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環境變化에 따라 相異한 會計節次나 方法을 擇하게 됨에 따라서 財務諸表의 相互比較性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다. 즉 會計政策의 變화를 公開함으로서 財務諸表의 利用者로 하여금 政策의 变動 상황을 파악하여 意思決定에 도움을 주려는 意圖에서 이의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다. 이같은 假定下에서 1972年 4月에 APB의 Opinion No.22는 會計政策의 公開(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를 통하여 財務諸表의 公正性을 期하려고 한 것이다.

會計變化를 公開하는 문제는 會計原則, 會計的推定, 그리고 報告實體의 变動을 公開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채택한 會計原則이나 節次를 繼續的으로 適用하여야 하는 것은 企業活動을 評價하고 또 未來活動을 計劃하는데 重要한 것으로, 오랫동안 會計에서 존중시되고 있다. 1971年 7月에 APB의 Opinion No. 20에서는 이같은 立場을 繼續的으로 존중하면서 妥當한 根據가 있는 경우에는 會計變動을 財務諸表에 表示하고 公開하도록 하였다.

여하튼 會計政策의 變化나 會計變動을 公開하는 問題는 投資意思決定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

5. 公開의 方法

會計情報의 公開는 財務報告의 全過程과 밀접한 관係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公開의 最善의 方法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立場에 따른 情報의 性格과 그의 相對的 重要性에 따라 다른 것으로서 一律的으로 말할 수가 없다. 會計情報의 公開方法을 다음의 順序에 따라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1) 財務諸表의 形式 및 配列

가장 積極하고 重要한 情報는 基本的 財務諸表에 表示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資產, 負債 및 損益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과 株主持分은 去來가 發生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가 나타나면 이를 正確性을 가지고 測定하여 財務諸表에 反映하여야 할 것이다. 1920年代와 1930年代에서부터 使用되어 오던 傳統的 財務諸表는 우리가 目的하는 바의 情報를 豈과적으로 얻기 위하여 改善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① 貸借對照表：현재 사용하고 있는 基本的 分類方法을 改善하는 問題를 考慮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流動資產에서 流動負債를 控除하여 運轉資本을 表示한다든지, 또는 貨幣性資產 및 負債와 非貨幣性資產 및 負債로서 區分表示하는 것이 그 例가 될 수 있다.

② 損益計算書：損益計算書도 利益의 相異한 概念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表示할 수 있다. 傳統的으로 多段階損益計算書(multiple-step income statement)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財務諸表의 利用者의 便宜를 위하여 單一區分損益計算書(single-step income statement)를 사용하는 문제를 檢討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賣出額에서 變動費와 固定費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損益計算書를 作成함으로서 賣出額의 变동에 따라 어느 程度의 利益이 나타날 것인가를豫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方法도 생각해 볼 問題이다. 또한 株當利益의 表示도 오늘날에는 重要한 會計情報의 하나가 된다.

③ 資金運用表：APB Opinion No. 3 (1963年10月)에서 資金의 調達과 運用에 關한 計算書를

財務報告書에 포함 시킬 것을 勸告하였고 APB Opinion No. 19 (1971年 3月)에서는 資金運用表를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와 더불어 基本的 財務諸表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다른 財務諸表에서 얻을 수 없는 重要한 情報를 提供하고 있다.

종래에 財務諸表를 公示하는데 있어서, 單一年度의 財務諸表만을 公表하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그러나 年度別 分析 및 추세에 關한 情報로서는 2年間 또는 그 以上的 年度에 該當하는 比較財務諸表를 提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會計用語와 詳細한 表示

會計情報의 公開하는 데 있어서 財務諸表의 形式이나 配列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이 會計用語의 嚴重性과 明瞭表示의 問제이다. 財務諸表의 積極한 區分表示와 計定科目을 明確히 나타낼 수 있는 表現은 財務諸表의 理解를 增加시키나 모호에 매한 用語의 亂用은 財務諸表를 混亂시키고 誤導할 우려가 있다. 計定科目은 簡潔하게 表示하여 一般이 잘 알 수 있으면 問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說明調로 풀이하여 表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會計에서 사용하는 많은 用語가 技術的 性格을 갖고 있기 때문에 用語의 嚴密性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大部分이다.

(3) 삽입구에 關한 情報(註記)

이것은 財務諸表의 本文에 팔호로써 간단히 表示하는 方法이다. 財務情報의 性格에 따라 長文으로 說明할 수 없을 때 計定科目 옆에 팔호하여 簡單하게 表示한다. 이와 같은 註記事項으로 널리 利用되는 것은 資產評價方法, 在庫資產의 價格決定方法, 減價償却方法, 使用이 제한된 現金의 表示, 根抵當의 設定, 有價證券 및 在庫資產의 時價 및 註釋事項을 참조하라는 表示 등을 들 수 있다.

(4) 註釋

오늘날 財務的情報의 公開方法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註釋(footnotes)이 있다. 註釋에 의하여 財務의 事件과 이와 關련된 財務의 資料를 完全히 公開하여 情報로서의 效益을

한층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註釋의 亂用은 財務諸表 그 自體의 發展을 沮害하는 면도 없지 않다. 註釋은 財務諸表本文에서 적절하게 表示할 수 없는 情報를 明瞭하게 하기 위한 代用으로 이용되고 있다.

註釋이 갖는 長點은 ① 財務諸表와 밀접하게 관련된 非計量的情報를 表現할 수 있다. ② 財務諸表 限定 또는 制約事項을 公開할 수 있다. ③ 財務諸表에 記載되지 않는 보다 詳細한 内容을 公開하는 有用한 方法이다. ④ 副次的 重要性을 갖는 計量的 또는 非計量的 資料를 表示하는 方法이 된다는 것 등이다.

註釋은 위와 같은 長點이 있는 동시에 短點도 있다. ① 註釋은 이에 대한 充分한豫備知識을 갖지 않고서는 이를 理解하고 활용할 수 없다. ② 틀에 박힌 說明은 計量的 資料를 要約한 경 우보다 意思決定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企業經營의 複雜性이 增大됨에 따라서 財務諸表 그 自體에 새로운 關係를 記錄하는 原則을 적절히 發展시키는데 努力하기 보다 註釋을 亂用할 風險性이 있다는 것 등이다.

註釋事項으로 表示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企業의 중요한 會計政策 및 會計變化 ② 特定資產에 대한 債權者의 權利 또는 優先權의 說明 ③ 偶發資產(contingent assets) 및 偶發債務(contingent liability)의 公開 ④ 配當金支給에 대한 制限事項의 公開 ⑤ 資本金 또는 持分所有主의 權利에 影響을 미치는 去來의 說明 ⑥ 未確定契約(executory contracts)의 說明.

(5) 補足的 報告書와 附屬明細書

財務諸表의 利用者로 하여금 보다 詳細한 情報를 알리기 위하여 補足的 報告書(supplementary statements)나 附屬明細書(supplementary schedule)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美國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附屬明細書는 때에 따라서 註釋으로 表示하든가, 또는 財務諸表나 註釋의 下段에 區分하여 表示하는 경우도 있다. 最近의 많은 年次報告書에 나타나고 있는 傾向은 財務上의 重要事項(financial highlight)으로 表示하든가 또는 正規의 財務諸表에 別途로 區分

表示하고 있다.

補足的 報告書는 附屬明細書와는 달리 相異한 樣式 또는 内容을 가지고 讀者의 資料에 대한 活用範圍를 넓히기 위해서 마련된다. 附屬明細書가 詳細한 情報를 提供한다는 特徵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補足的 報告書는 別途의 樣式을 가지고 추가적 情報를 提供하는데 差異가 있다. 補足的 報告書의 典型的 例는 物價水準變動에 따라 財政狀態나 財務活動에 미치는 影響을 公開한 財務諸表와 종래의 資金運用表를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資金運用表는 基本財務諸表의 하나가 되었으나 이와 같이 되기 以前에는 補足的 報告書의 重要한 位置를 점하고 있었다.

(6) 監查報告書

監查報告書는 會社에 관한 重要한 財務的情報를 公開하는 役割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情報를 公開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役割을 한다. ①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方法과 다른 會計方法을 채택함으로서 발생하는 重要的 結果, ② 어떤 하나의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方法으로부터 별도의 會計方法으로 변경함으로써 나타나는 重要的 結果, ③ 會計報告書에서 採擇된 2 以上的 會計方法의 承認에 관해서 監查人과 被監查人과의 意見의 相違 등이다.

財務諸表는 被監查人の 報告書인 것이지 監查人の 所有에 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監查人이 財務諸表를 作成할 때 사용한 會計方法이 不適當하다든가 또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어긋났다고 確信할 수 있으면, 監查人은 合當한 會計方法으로 변경하도록 被監查人을 說得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이와 같이 하는데 失敗하게 되면 監查人은 그 會計方法에 대해서 同意를 하지 말고, 그 方法이 미치는 影響에 대해서 명확하게 說明할 義務가 있다.

(7) 社長의 書信

以上에서 說明한 諸種의 書類에서 企業의 大部分의 情報는 公開될 수 있다. 그러나 情報에 따라서는 會社의 社長이나 理事會의 議長 등 經營層에서 書信의 形式을 갖는 情報가 있다. 이

書信에 나타나는 情報는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當該年度에 나타난 것으로서 企業의 經營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非財務的 事件과 變動, ② 產業의 장래에 대한 期待와 이 같은 期待에 대한 當會社의 役割, ③ 次期以後의 成長 및 活動計劃, ④豫想되는 資本의 支出 및 研究努力에 投資할 金額이나 그것이 가져올 效果에 대한 展望 등이 있다.

위에서 非財務的 事件과 變動(nonfinancial events and changes)이라 하는 것은 最高經營層의 개편이나 重要한 會社의 政策變化, 會社 또는 當該產業에서 나타난 重大한 技術的改善, 會社의 製品需要나 價格에 있어서의 變化, 그리고 會社의 장래 營業活動에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파업, 戰爭, 政治的 變革, 재난 등을 말한다. 이 같은 非財務的 事件이 企業의 장래 營業活動이나 財政狀態에 影響을 미칠 것으로豫想되면 經營層이 이를 報告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財務諸表에 表示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件들의 大部分은 評價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들이 財務諸表에 表示된 후에라도 經營層으로 부터 이에 대

한 完全한 公開가 要望된다.

企業이 期待하고 있는 것도 評價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이는 非財務的 事件 보다도 評價하여 公開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經營者들은 밝은 展望에 대해서만 公開하려 하기 때문에 利用者들이 誤導될 危險性이 있기 때문이다.

6. 結 言

會計情報의 公開는 會計情報가 뉴구를 對象으로 하고 그 情報가 어떤 目的으로 使用될 것인가 하는 問題를 決定한 후에 作成되는 財務諸表의 基本目的과 관係을 맺고 있다. 가장 適切한 財務的情報는 計量的 方法으로 要約하여 公式的인 財務諸表로서 提示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情報로서의 有用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註釋, 附屬明細書, 補足의 報告書 등의 書類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記述的情報는 要約의 형식으로 財務諸表의 本文에 表示하는 것이 좋다. 보다 詳細한 記述은 註釋 또는 그밖의 紙面을 利用하여 表現하여야 할 것이다.